

모델 34

특정공정 수행기준 활용 모델

01 |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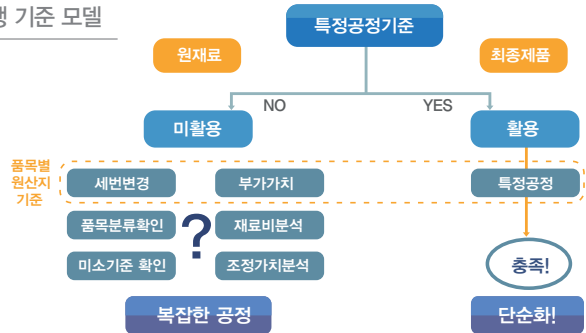
- 협정에 따라 수출물품에 개별 적용되는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또는 류 또는 호의 주 형식으로 규정된 특정가공공정 규정을 활용한 모델

특정공정기준은 제품의 제조공정 중 각 제품에 대해 가장 중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당해 제품의 주요한 특성을 발생시키는 기술적 제조·가공작업을 열거하여 지정된 공정이 역내에서 수행된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

02 | 비즈니스 모델

- 원재료의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 발생수준 등에 대한 관리가 필요 없고 특정공정만 입증하면 되므로 원산지관리가 편리한 모델
 - 해당 공정에 대한 입증자료 등을 갖춘 상태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
- FTA 활용 수출업체의 사후 원산지검증 등 원산지 관리 비용 감소와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가능성 증가
- 원재료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원산지가 인정되므로 단가가 저렴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최종제품의 가격경쟁력 향상 가능

특정 공정 수행 기준 모델



※ (유의사항) 수출물품이 협정의 특정공정기준 적용물품인지 확인한 후 자사 수행 공정이 원산지결정기준에 부합되는지 엄밀히 확인 필요

03 | 활용 및 확산분야

- 석유 화학제품 등 특정공정 기준이 규정된 품목